

언론분쟁의 대체적 해결방식에 관한 개선방안 검토

신 용 도

(법무법인 로원 대표변호사)

I. 들어가며

‘언론분쟁’이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을 의미하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언론사 등’이라 함은 기존의 전통적인 언론사(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외에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법 제2조).

오늘날 정보화 사회가 극도로 발달함에 따라 언론사 등의 언론 보도와 관련한 분쟁이 날로 폭증하고 있고 그 유형과 내용 또한 더욱 복잡해 지고 있다. 이러한 언론분쟁은 궁극적으로는 소송과 재판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만 소송절차는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특히 언론 보도와 관련된 피해는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서는 재판에 의하는 것이 오히려 권리구제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도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각광받고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은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분쟁의 해결수단으로는 소송이 유일한 것이 아니며 협상·조정·중재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소송의 분쟁해결제도는 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② 분쟁 해결이 신속하며, ③ 단순히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당사자 간에 발생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줄 수도 있는 등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방식에 비하여 여러 가지 무시 못할 장점을 가지

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980. 12. 31.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의한 분쟁조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론분쟁의 해결 건수와 해결 영역을 확대하여 오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ADR 기구로서 확고한 위치를 다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취급한 신청사건 중 자발적인 조정성립 비율이 전체 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거나(별첨자료1. 참조), 손해배상에 관한 조정건수가 지극히 미미한 점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중재위원회의 언론조정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조정성립 비율을 제고하는 방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활성화 방안, 손해배상 제도의 적극적 운용 방안에 관하여 차례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조 정

1. 조정의 개념

조정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가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분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쉽게 협상을 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분쟁해결방법인데, 언론분쟁에 제3자인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인으로 나서서 신속·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를 설득, 당사자들의 상호양해를 기반으로 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언론조정이라고 한다. 또한, 언론분쟁에 관한 조정신청사건을 처리하는 권능을 언론조정권이라고 하는데, 언론조정권은 ① 조정절차 지휘권, ② 각종 송달사무, ③ 증거조사 및 사실조사권, ④ 각종 결정권한 등이 포함된다. 언론조정은 그 법적 성격이 입법·사법·행정의 국가작용 중 사법작용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언론조정권은 그 성질상 사법권 내지 재판권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고 있다. 언론조정권을 사법권(재판권)의 일종으로 본다면, 법원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조정권을 행